

---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

2026. 1.



# 차 례

<b>I.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b>	<b>1</b>
1. 목적 및 근거	1
2. 주요내용	1
3. 추진체계	2
<b>II.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b>	<b>2</b>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개요	2
2. 제품 구매 절차	3
<b>III.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집계·제출방법</b>	<b>8</b>
<b>IV. 협조사항</b>	<b>12</b>
[붙임 1] 우선구매제도 관련 근거 법령	13
[붙임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률	14
[붙임 3]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16
[붙임 4] 자치단체 구매실적 및 총구매액 작성방법	23
[붙임 5]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전산매뉴얼	27
[붙임 6] 자주하는 질문(FAQ)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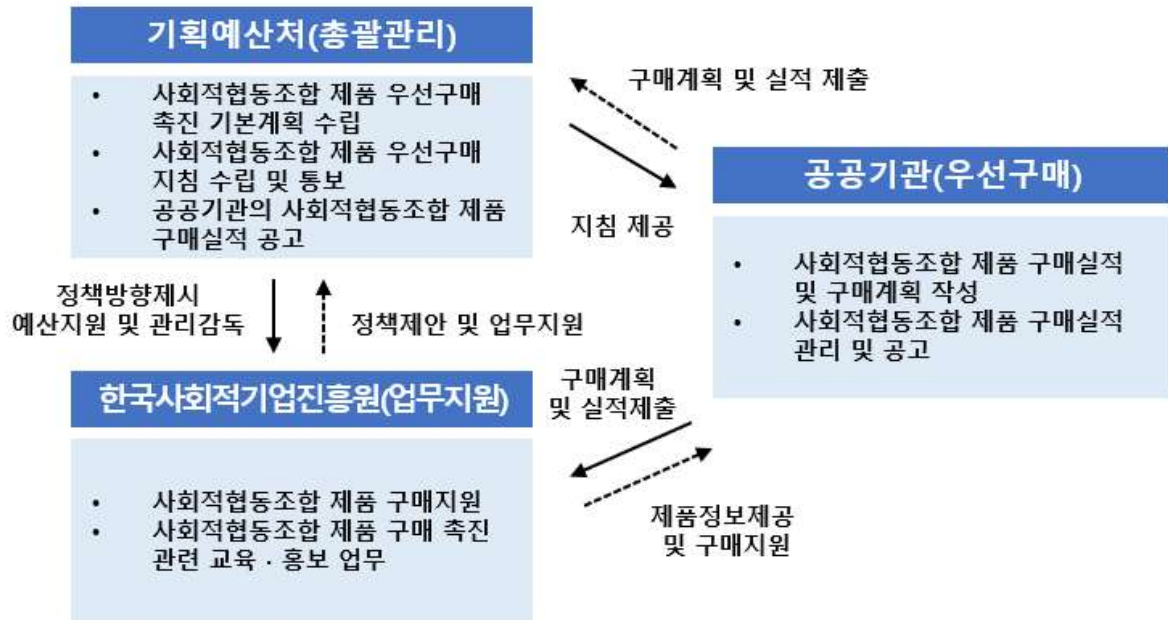
## 1. 목적 및 근거

- (목적)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 2. 주요 내용

-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
-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붙임3) 참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 \* 교육청(17개)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교육기관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사회적가치 조달플랫폼'(가치장터, [www.sepp.or.kr](http://www.sepp.or.kr))에 입력
- (공고) 기획예산처는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4월 30일까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공고
  - 제출기한(2월말)까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고 시 명단 공개

### 3. 추진체계



## II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

###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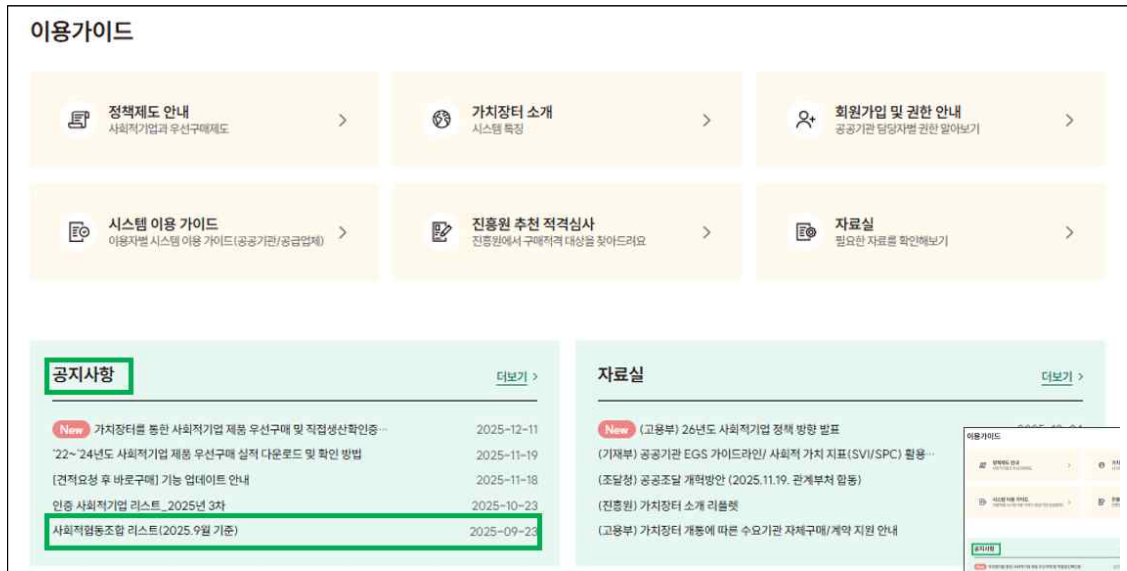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구분		-
법인성격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	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
설립절차 (소관부서)	인가제(법 제85조, 114조)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제(법 제15조, 71조) (시·도지사)
경영공시	의무사항 (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등)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등)
배당	배당불가	배당가능
우선구매	대상	비대상

- 사회적가치 조달플랫폼 '가치장터'(sepp.or.kr), 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go.kr)에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사업자번호 포함)는 상시 업데이트되며 다운로드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확인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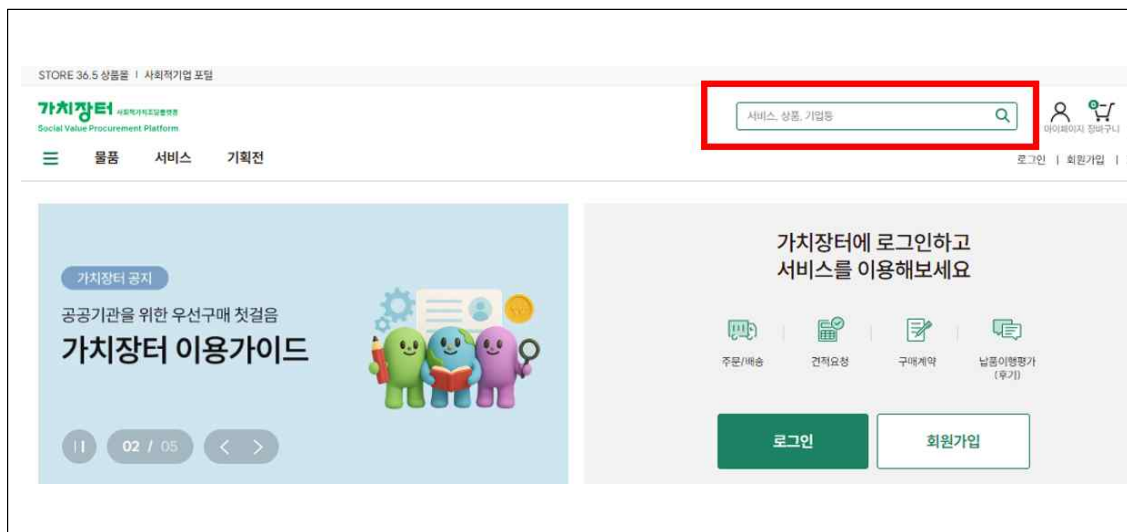
\* ①가치장터 접속→ ②공지사항 → ③'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 게시글 확인 및 다운로드

## 2. 제품 구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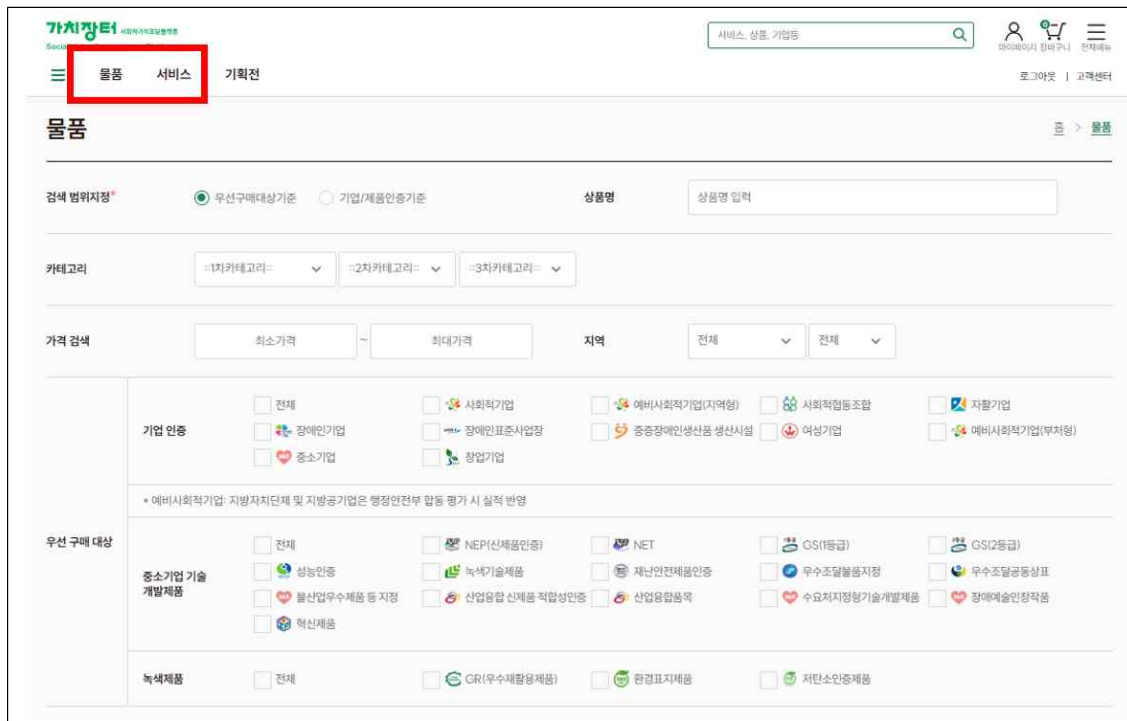
### 1 단계 : 구매 대상 품목 확인

#### □ 사회적가치 조달플랫폼 가치장터(sep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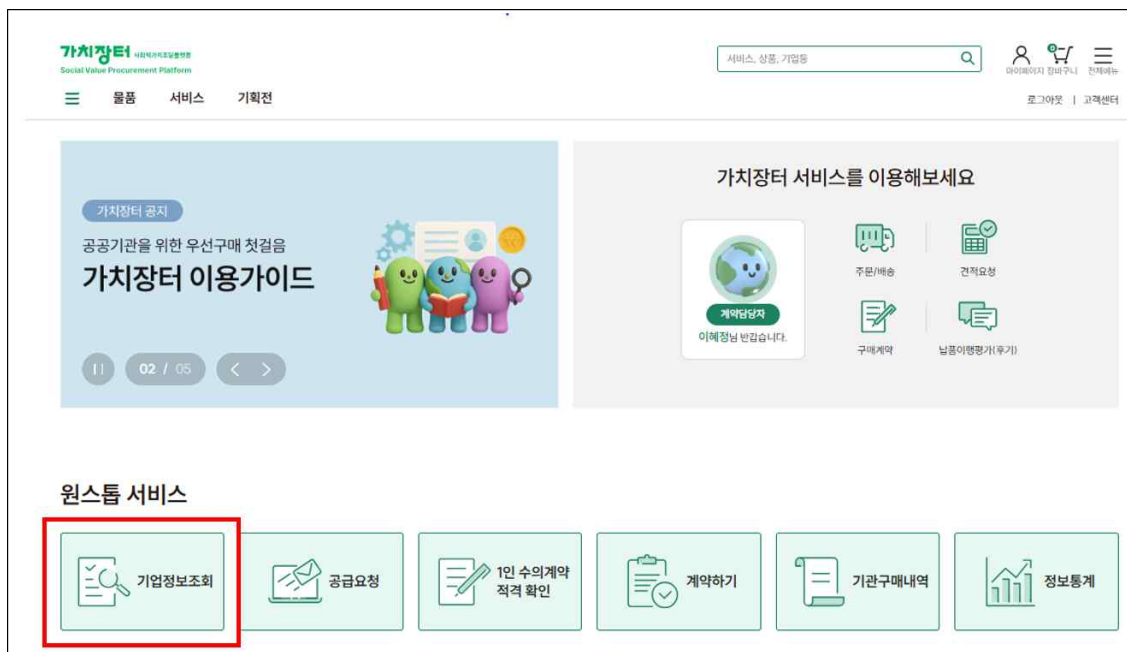
- (통합 검색) 메인화면 상단 통합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명 및 기업명 등 통합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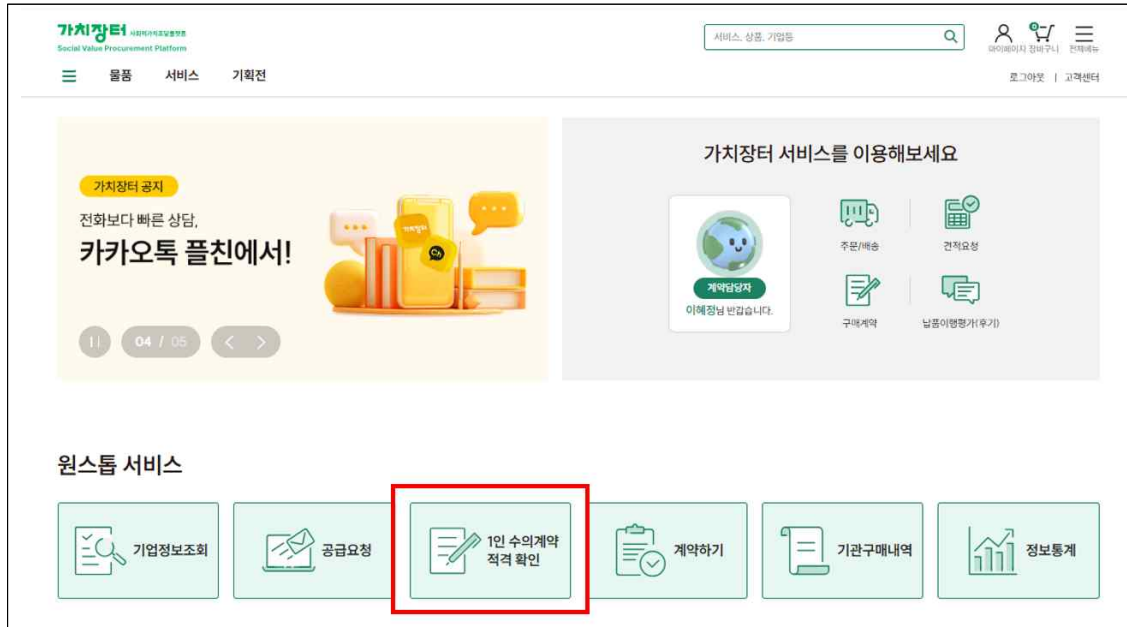
○ (품목별 검색) 상단 메뉴 '물품' 또는 '서비스' 에서 조건 검색



○ (기업정보조회) 메인화면 '기업정보조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정보 조회 가능



- (1인 수의계약 적격확인) 메인화면 '1인 수의계약 적격 확인'에서 수요기관 계약 요건에 따라 계약 적격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가 1인 수의계약에 적합한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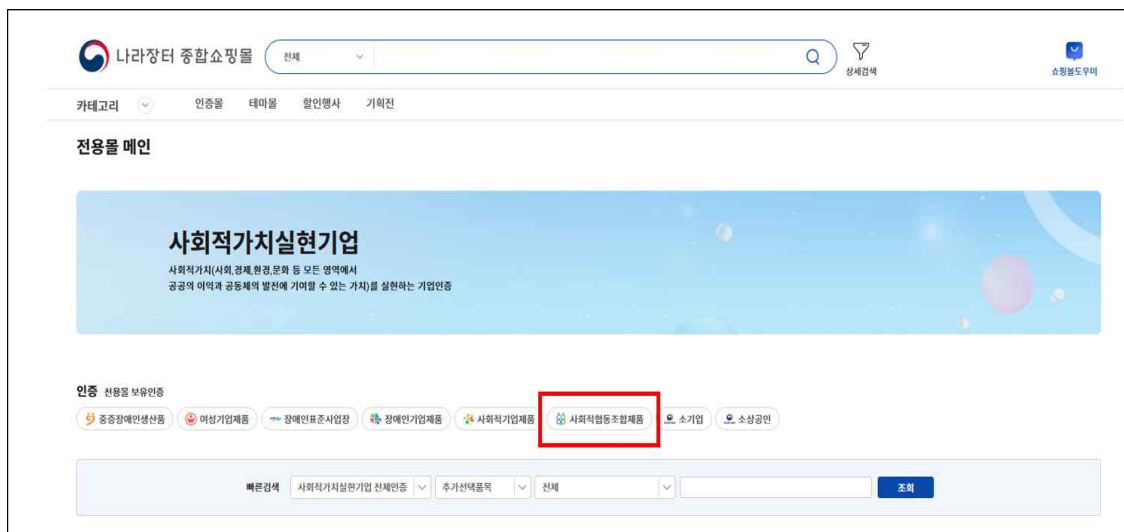


## □ 공공구매 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상담 가능 (☎1566-5365)

## □ 나라장터 내 '사회적가치실현 기업 인증물' 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상단 메뉴 [인증물]> [사회적가치실현기업] 페이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조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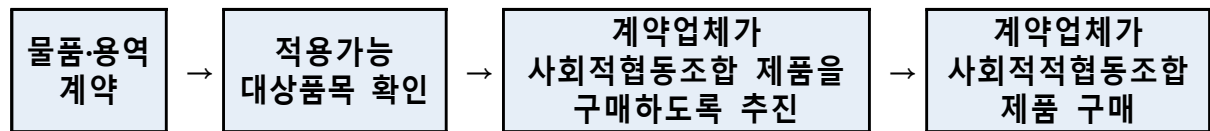


## ②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 구매방법

-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한 구매)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비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
  - \* 계약상대자(업체)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단, 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 단, 계약상대자(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구매실적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 < 간접구매 절차 >



### □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 및 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능
  -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를 통해 확인서 발급 가능

- (입찰자격 평가) 낙찰자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사회적협동조합 가점 부여를 활용
  - 자치단체 조례 및 공공기관별 구매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 ③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교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사업 운영을 위탁한 경우, 계약금액을 구매실적으로 인정
  - \* (참고자료)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자료실 →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 (참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가능한 서비스 품목 >

구분	구매사례	품목
교육	방과후교실 위탁, 취업교육 등	· 창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방과후돌봄교실, 놀이시설 안전교육 등
돌봄/의료	직원 건강관리, 돌봄시설 위탁	· 예방접종, 건강검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공연/문화	공연, 문화행사	· 오케스트라, 뮤지컬, 타악연주 등
도시락	식사, 다과준비	· 케이터링, 도시락
청소/방역	건물관리, 청소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재활용, 세차, 시설관리 등
인쇄/IT/디자인	인쇄물, 홍보물	· 현수막, 리플렛, 명함, 기념패, 웹디자인 등

### Ⅲ

##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집계·제출방법

### □ 구매율(구매실적/총구매액)

#### ○ (총구매액) 물품과 용역(공사 제외)의 총 구매금액

- 구매율 산정 시 모수(분모)가 되는 금액으로, 품의 유형과 무관하게 물품(재화), 용역(서비스) 구매 관련 예산 비목으로 지출한 총구매액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총구매액에서 공사를 제외한 값)

#### ○ (구매실적) 물품·용역·공사가 포함된 총 구매실적

- 구매율 산정 시 분자가 되는 금액으로, 기관에서 실제 구매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용역·공사) 구매실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평가주체: 행안부)의 경우 공사는 총구매액, 구매실적 모두 제외(물품+용역 구매만 포함)

### □ 구매실적 인정기준

#### ○ 구매방식

①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구매한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실적

②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非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업(非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을 구매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단,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계약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 자치단체에서 발행된 바우처 등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에 사용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구매실적 제외 기준

<기타 총구매액(분모) 및 구매실적(분자) 제외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총 구매액	구매 실적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지출	■ 기관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사례금·수당,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	제외	제외
원자재재료 구매액	■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제외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사회적협동조합이 대기업·중소기업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완제품을 구매하여 로고나 디자인 인쇄, 각인 등 제품에 변형을 가해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예외	포함	제외
공공기관 자회사와의 계약	■ 공공기관 자회사(동일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위탁 계약의 경우, 총구매액에서 제외	제외	제외
그 밖의 총구매액 제외로 인정된 사항	■ ①재경부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 세부산식"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구매액에서 제외되고, ②1번의 제외 사유가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에도 적용되어 총구매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	제외	제외

<구매실적 인정(구매가액 전액 인정) 예시>

- 사회적협동조합이 OBM, OEM 또는 ODM의 방식 등으로 제품을 제작,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반제품·원재료를 구매하여 공정(조립 등)을 가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완제품을 구매하여 로고나 디자인 인쇄, 각인 등 제품에 변형을 가해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 세트상품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의 물품가액이 전체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 물품 가액만 인정
-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비스(용역·공사) 제공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 시, 해당 물품 구매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계약가 전부 인정

※ 공공기관 간 거래 → 수탁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실적은 위탁한 공공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단, 수탁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실적으로 포함한다면, 위탁 공공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에서는 제외(실적 중복인정 x)

**< (예시) 보조금성 통계목 우선구매 실적 세부기준 >**

	<b>사업운영 보조금(실적포함)</b>	<b>기업운영 보조금(실적 제외)</b>	
<b>개념</b>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기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b>세부 설명</b>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사업 운영을 위탁, 또는 공모 사업 등 수행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제품(재화 및 서비스)와 관계없이 기업의 운영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b>예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li> <li>■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비</li> <li>■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li> <li>■ 사회적주택 운영인력비</li> <li>■ 마을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비</li> <li>■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보조금</li> <li>■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보조금</li> </ul>	<b>경비성 지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품권 거래대금</li> <li>■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li> <li>■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li> </ul>
		<b>보조금 지원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li> <li>■ 지역특화사업</li> <li>■ 사회보험료, 공공요금</li> <li>■ 자활기금 대여(기업자금 대출)</li> <li>■ 자문료, 사례금, 시상금, 수수료, 이자 등</li> <li>■ 휴업지원금, 재난긴급지원금, 생존자금 등 보조금</li> <li>■ 사례관리 대상자 생계비 지원</li> </ul>

## □ 구매실적 집계방법

- 집계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이며,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일 기준임
  - \* 2025년 구매실적 대상기간은 2025.1.1.부터 2025.12.31. 까지
  - \*\* 2026년 구매계획 대상기간은 2026.1.1.부터 2026.12.31. 까지
- 구매실적은 제품 구매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번호의 매칭을 통해 구분하여 집계
  - (국가기관·자치단체·교육청·지방공기업·의료원) 기관의 재정시스템을 통해 집계
    - \* dBrain(국가기관), e호조(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LOBAS(지방공기업), K-HOPES(지방의료원)
  - (그 외 공공기관)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를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집계
  - 기관의 재정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수기로 집계 필요

## □ 구매실적 제출방법

- 최상위기관이 산하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
  - \* (예)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각급 국·공립교육기관 포함)의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
- 가치장터(www.sepp.or.kr)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입력
  - \* [붙임5]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전산매뉴얼 참고
  - \* '공공기관' 회원ID 중 '실적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만 실적 입력 가능
- 모든 공공기관은 [품목별 구매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월별 구매실적]으로 등록 가능
  - \* (품목별 구매실적 작성항목) 지급일자,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금액 등
- 공공기관은 구매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해야 하며, 실적 입증 필요시 기획예산처에 제출

## IV

## 협조사항

- 공공기관 담당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제품 구매 시 실적 확인 철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이 구매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
    -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과 무관한(ex)사회적협동조합이 대기업 완제품을 단순 납품한 경우 등) 경우는 반드시 구매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 \* 우선구매 실적을 공공기관이 고의·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이 평가부처(행안부, 재경부)에 통보·공유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에 사회적가치 항목(참가자격 및 평가기준 등) 반영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하기관에서도 구매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
    - \* 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구매 실적보다 높은 비율로 수립
  
- 우선구매 교육 및 구매 독려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 및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구매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공공구매지원센터, ☎1566-5365)에서 실시하는 교육, 구매상담회 등에 참여 협조 요청
    - \*\* 진흥원 온라인 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을 통해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교육' 상시 수강 신청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업체(용역)와 계약체결 시, 계약수행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독려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신설: '14.7.22.부터 시행)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신설: '14.7.22.부터 시행)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참고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참고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참고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붙임 3

###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 '25년 구매실적 및 '26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857개 기관

구분	지정 결과	주무부처/설립기관	기관명
신규 (+7)	기타공공기관 (+4)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방공기업 (+2)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시설관리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시설관리공단
	국가기관 (+1)	대통령경호처	
유형 변경 (±3)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현황 ('25년말 기준) >

(단위: 개)

합 계	국가 기관	자치단체 (243)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 방 공기업	지 방 의료원	기타 특별 법인
		광역시	기초							
857 (+7)	58 (+1)	17	226	17	31 (-1)	57 (+2)	243 (+3)	166 (+2)	36	6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현황 ('25년말 기준): 857개 기관

구분	기관명
국가기관 (58)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 자치 단체 (243)	광역 (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군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구분	기관명
	<p>(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p> <p>(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p>
<p><b>교육청</b> (17)</p>	<p>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p>
<p><b>공업</b> (31)</p>	<p>(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p> <p>(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p> <p>(기재부) 한국조폐공사</p> <p>(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p> <p>(농식품부) 한국마사회</p> <p>(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p> <p>(기후부) 한국수자원공사</p> <p>(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p> <p>(해수부) 해양환경공단</p> <p>(방미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p>
<p><b>공공기관</b> (331)</p> <p><b>준정부기관</b> (57)</p>	<p>(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p> <p>(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p> <p>(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p> <p>(복지부) 국민연금공단</p> <p>(노동부) 근로복지공단</p> <p>(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p> <p>(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p> <p>(교육부) 한국장학재단</p> <p>(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p> <p>(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p> <p>(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p> <p>(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p> <p>(문체부) 한국관광공사</p> <p>(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p>

구분	기관명
	<p>(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p> <p>(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p> <p>(기후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p> <p>(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p> <p>(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p> <p>(공정위) 한국소비자원</p> <p>(경찰청) 도로교통공단</p> <p>(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p>
기타 공공 기관 (243)	<p>(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p> <p>(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p> <p>(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p> <p>(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p> <p>(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p> <p>(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p> <p>(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p>(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p> <p>(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p>

구분	기관명
	<p>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p><b>(농식품부)</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p> <p><b>(산업부)</b>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p><b>(복지부)</b>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p> <p><b>(기후부)</b>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p> <p><b>(노동부)</b>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p> <p><b>(성평등부)</b>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b>(국토부)</b>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p> <p><b>(해수부)</b>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b>(중기부)</b>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p> <p><b>(공정위)</b> 한국공정거래조정원</p> <p><b>(금융위)</b>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p> <p><b>(방미통위)</b> 시청자미디어재단</p> <p><b>(원안위)</b>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p> <p><b>(식약처)</b>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p>

구분	기관명
	<p>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p> <p>(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p> <p>(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p> <p>(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p> <p>(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p> <p>(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p> <p>(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p> <p>(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p> <p>(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p> <p>(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p> <p>(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p>
지방공기업 (166)	<p>(서울)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p> <p>(부산)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p> <p>(대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p> <p>(인천)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p> <p>(광주) 광주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p> <p>(대전)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p> <p>(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p> <p>(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p> <p>(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p>

구분	기관명
	<p>화성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군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양주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오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여주도시공사, 양평공사</p> <p><b>(강원)</b>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강원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p> <p><b>(충북)</b> 청주도시공사, 단양관광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p> <p><b>(충남)</b> 천안도시공사, 당진도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산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p> <p><b>(전북)</b>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완주군시설관리공단</p> <p><b>(전남)</b>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p> <p><b>(경북)</b> 경상북도관광공사, 구미도시공사, 문경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포항시설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영천시시설관리공단</p> <p><b>(경남)</b>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창원군시설관리공단,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p> <p><b>(제주)</b>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p>
<p><b>지방의료원 (36)</b></p>	<p><b>(서울)</b> 서울의료원</p> <p><b>(부산)</b> 부산의료원</p> <p><b>(대구)</b> 대구의료원</p> <p><b>(인천)</b> 인천의료원</p> <p><b>(경기)</b>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p> <p><b>(강원)</b>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p> <p><b>(충북)</b>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p> <p><b>(충남)</b>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p> <p><b>(전북)</b>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p> <p><b>(전남)</b>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p> <p><b>(경북)</b>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포항의료원</p> <p><b>(경남)</b> 마산의료원</p> <p><b>(제주)</b>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p>
<p><b>특별법인(6)</b></p>	<p>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p>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 주요 유의사항 >****□ 총구매액(분모) 작성****○ 총구매액: 물품+용역(공사제외)**

- 품의 유형 '일반' 중에서 보조금 제외한 금액 및 e호조로 지출하지 않은 실적(간접구매, 바우처) 등 별도 합산 필요

※ **합동평가 총구매액과 다름에 유의(합동평가의 총구매액은 편의상 e호조의 물품 및 용역의 지출 금액으로 산정)**

**□ 구매실적(분자) 작성****○ 구매실적: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공사제외)**

- e호조로 자동 추출되지 않는 구매실적(간접구매, 바우처 등) 등 별도 합산 필요

○ 실적 검증을 위해 **'품목별 구매실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접구매의 경우 **'통계목'** 반드시 입력

**□ 인정 기준**

○ **(인정)** e호조의 총구매 중 **'물품'·'용역'** 및 **거래(去來)대금**으로 지출된 **'일반'**만 해당(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포함)

○ **(제외)** e호조의 총구매 중 **'일반'**인 금액 중에서 **거래(去來)대금**이 아닌 **지원금, 보조금, 수당, 운영비** 등

○ 지침 p26의 **<예산 통계목별 인정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 판단

□ 구매실적 인정 기준(품의 유형, 통계목)

○ e호조 추출 자료의 품의 유형별 물품/용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

구분	물품	용역
품의 유형	물품구입	용역 * 공사는 총구매액, 구매실적(분모, 분자) 모두 제외
	관급자재	수리/수선
	<b>일반 중 물품</b>	<b>일반 중 용역</b>

○ 품의 유형 중 '일반'의 구매실적 인정 기준

구분	구매실적 인정 (거래 성격의 대금)	구매실적 제외 (거래 성격이 아닌 지원금·보조금 등)
거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성을 가진 거래(去來) 성격의 금액으로서, 물품·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대금(거래의 개념)</li> <li>*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장부상 매출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에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보조금 등(거래의 개념 아님)</li> <li>*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장부상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li> </ul>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사업비, 정부행사 운영비, 정부양곡 택배비, 노인종합돌봄·가사 간병·장애아동지원·산모신생아 바우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지원금, 종사자 수당,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노후차 폐차 지원금, 기능보강사업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설지원비 등</li> </ul>

\* e호조의 총구매에 미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은 '총구매액'에 추가하여 보정필요

\*\* 간접구매 또는 바우처 사용을 통해 구매된 금액 등은 e호조에서 추출되지 않으므로 수기로 집계

\*\*\*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총구매액은 편의상 e호조 시스템상의 물품 및 용역의 지출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차이 발생

○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제출 양식

<직접구매 제출 양식(엑셀)>

지급 일자	기관명 (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필수)

\* 통계목은 e호조에서 추출한 직접구매만 작성(e호조 미추출자료는 미기입 가능)

<간접구매 제출 양식(엑셀)>

지급일 자	기관명 (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예산 통계목별 인정여부>**

예산 통계목	예산 통계목별 설명	인정여부
민간경상보조 (307-02)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X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	X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X
이차보전금 (307-08)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X
운수업계 보조금 (307-09)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X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07-10)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X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X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1, 02)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민간 자본형성 보조금	X

\* 위 통계목 중 거래성격의 대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적인정 가능

\*\* 위 표 외에도 구매·거래대금이 아닌 보조금 등은 제외(출연금(306-01),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등)

## 붙임5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전산매뉴얼

### □ 가치장터(www.sepp.or.kr) 접속 및 우선구매실적 페이지 이동

#### ○ 회원유형 '우선구매 실적담당자'으로 회원가입(기관당 1계정)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은 실적입력 대상 최상위기관으로 등록

\* 시스템 관련 문의처: 가치장터 고객센터(02-2205-2365)

회원가입

홈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가입완료

① 가치장터는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국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구매·계약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매·계약처리를 지원합니다.

② 기관 차원의 우선구매 및 후발결제만 가능하므로 선불결제(카드결제, 포인트 등) 또는 개인적인 상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STORE 36.5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담당자

계약담당자

**우선구매실적담당자**

공공기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실적담당자와 계약담당자, 공공기관 일반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

#### ○ 가치장터 메인화면 상단 좌측 [우선구매실적]을 선택하여 페이지 이동

가치장터 Social Value Procurement Platform

서비스, 상품, 기업들

로그아웃 | 고객센터 **우선구매실적**

가치장터 공지

공공기관을 위한 우선구매 첫걸음  
**가치장터 이용가이드**

02 / 05

가치장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주문/배송

견적요청

구매계약

납품이행평가(후기)

원스톱 서비스

기업정보조회

공급요청

1인 수의계약 적격 확인

계약하기

기관구매내역

정보통계

## ① '2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직접구매) 등록

- ('25년 총구매액)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입력 시 기입한 총구매액 (기관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과 자동 연계됨 (별도 입력 X)
- 사회적기업 실적 등록 완료 후 사회적협동조합 실적 등록
- [우선구매실적] → [사회적협동조합 실적 등록 및 관리]

\* [기준연도 조회]로 과거실적 조회 가능

- 모든 공공기관은 '품목별 구매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월별 구매실적'으로 등록 가능
  - 자치단체의 경우 [품목별 구매실적] 메뉴에서만 등록 가능하며, [월별 구매실적] 메뉴를 통해 등록 불가
  - 월별 구매실적 제출 시 별도 구매실적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등) 보관 필요
-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 '0원' 입력

##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1)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선택 후 '엑셀양식 다운로드'하여 저장

**[ 2025년 ] 구매실적 등록**

등록방식 선택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해당 사항 없음(구매실적 0인 경우)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지급일자별 구매내역 입력 시 월별 구매실적이 자동 입력되는 방식

**[사회적협동조합(직접구매)] 품목별 실적 일괄등록**

품목별 세부실적

등록일(최근 변경일) 2026.01.06 18:18:47

업로드 엑셀파일  
 진흥원\_20260106\_181632.xlsx \*  
 진흥원\_20260106\_181810.xlsx \*  
 prchsCoopPlanSample (1)\_20260106\_192331.xlsx \*

2) 엑셀양식(직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25년 구매실적 작성

- (작성항목) 지급일자, 최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 작성항목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접구매인 경우에는 '통계목'에 간접구매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목 작성 필수

- (유의사항) 모든 엑셀 양식의 데이터 표시형식은 모두 [텍스트]이며, 원본의 표시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변경시 등록오류 발생)

### <엑셀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 원본 데이터 표시형식('텍스트') 유지
  - 지급일자 : [YYYY-MM-DD] 또는 [YYYYMMDD] 형태 유지, [날짜] 형식으로 변경 금지
  - 사업자등록번호 : [AAA-BB-CCCC] 또는 [AAABBCCCC]의 형태 유지, [사용자지정] 형식으로 변경 금지
  - 지급금액 : [회계] 또는 [통화]로 변경 금지, '원' 단위 작성

#### <표시형식 유지 방법>

: 엑셀에서 작성한 내용 복사 → 메모장에 붙여넣기 → 메모장에 붙여넣은 내용을 다시 복사 → 엑셀 표시형식을 [텍스트]로 지정 후 붙여넣기

#### □ 하단 공란 삭제

- 작성내용 하단에 테두리만 있는 공란이 있는 경우 모두 삭제

직접구매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기업/에비/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2025-01-17	A지부	기념품 구매	128-82-12076	1000000	통계목
2025-02-18	A지부	기념품 구매	214-87-03169	42000000	통계목
2025-03-19	A지부	기념품 구매	246-86-02554	65000000	통계목

### 3) 작성파일(엑셀) 업로드

### 4) 첨부파일 등록 및 정합성 검사 후 저장

#### ○ 파일 선택 후 등록방식(①초기화 후 등록 ②추가등록) 선택

- \* (초기화 후 등록)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자동 삭제. 등록 데이터로 갱신
- \* (추가등록) 저장된 데이터 유지되고, 데이터 추가 등록
- \* 구매내역은 최대 3,000개까지 가능. 3,000개를 초과하는 내역은 '추가등록'

#### ○ 파일 등록 후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실시. 검사 결과(정상, 비매칭, 공란, 오기재, 중복)에 따라 데이터 확인·수정하여 저장

-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 \* (비매칭) 구매실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와 다른 경우
- \* (공란) 엑셀양식의 입력 항목 입력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경우
- \* (오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등 잘못 입력된 경우
- \* (중복) 동일한 구매실적이 기재된 경우

## < (선택)[월별 구매실적] 등록 >

- 품목별 구매실적 방식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택하고,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시 등록하지 않음

\* 자치단체는 월별 구매실적 등록 불가

### 1) '월별 구매실적 등록' 선택 후 '엑셀양식 다운로드'하여 저장

**[ 2025년 ] 구매실적 등록**

등록방식 선택  물품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 구매실적 등록  해당 사항 없음(구매실적 0인 경우)

①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지금일자별 구매내역 입력 시 월별 구매실적이 자동 입력되는 방식  
 ② 월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물품/용역에 따른 구매실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입력하는 방식

**[사회적협동조합(직접구매)] 월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 구매실적

등록일(최근 변경일) 2026.01.08 15:22:58

업로드 엑셀파일

### 2) 엑셀 양식(월별 구매실적(양식).xlsx)에 월별 구매실적 작성 (원 단위)

- 구매금액이 없을 경우 0원 기입

구매실적							
* '공사' 실적은 '용역' 실적에 포함되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구분코드	실적구분	대상구분코드	대상구분	1월	2월	3월	4월
02	사회적협동조합	01	물품				
02	사회적협동조합	02	용역				

### 3) 작성파일(엑셀) 업로드

**[사회적협동조합(직접구매)] 월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 구매실적

등록일(최근 변경일) 2026.01.08 15:22:58

업로드 엑셀파일

#### 4) 첨부파일 등록 및 정합성 검사 후 저장

○ 파일 등록 후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실시. 검사 결과(정상, 비매칭, 공란, 오기재, 중복)에 따라 데이터 확인·수정하여 저장

-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 \* (비매칭) 구매실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와 다른 경우
- \* (공란) 엑셀양식의 입력 항목 입력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경우
- \* (오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등 잘못 입력된 경우
- \* (중복) 동일한 구매실적이 기재된 경우

#### 5) 입력 내역 확인 및 구매실적 저장

**[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단위: 원)

시기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5)				총 구매액(2025)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물품	용역
1분기	1월	2,000,000	0	2,000,000	0	0	
	2월	400,000	0	500,000	0	0	
	3월	400,000	0	500,000	0	0	
2분기	4월	400,000	0	500,000	0	0	
	5월	400,000	0	500,000	0	0	
	6월	400,000	0	500,000	0	0	
3분기	7월	400,000	0	500,000	0	0	
	8월	400,000	0	500,000	0	0	
	9월	400,000	0	500,000	0	0	
4분기	10월	400,000	0	500,000	0	0	
	11월	400,000	0	500,000	0	0	
	12월	400,000	0	500,000	0	0	
합계	6,400,000	0	7,500,000	0	0		
소계	6,400,000		7,500,000		0		
총계			13,900,000		0		

엑셀 다운로드 | 구매실적 저장

## ② '2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간접구매) 등록

###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 총구매액 등록은 인증사회적기업(직접구매)에서만 가능

1)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선택 후 '엑셀양식 다운로드'하여 저장

- 소속기관에서 가치장터를 통해 구매·계약된 내역은 [가치장터 거래실적 다운로드]하여 확인

**[ 2025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등록**

1 사회적협동조합  
(직접구매)

2 사회적협동조합  
(간접구매)

**[ 2025년 ] 구매실적 등록**

등록방식 선택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해당 사항 없음(구매실적 0인 경우)

①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지급일자별 구매내역 입력 시 월별 구매실적이 자동 입력되는 방식

**[사회적협동조합(간접구매)] 품목별 실적 일괄등록** 가치장터 거래실적 다운로드

품목별 세부실적	엑셀 업로드	엑셀양식 다운로드	
등록일(최근 변경일)			
업로드 엑셀파일	2단계 구축 용역 심사표_총합_20250106_181111.xlsx		

① 품목별 실적을 등록하면, 해당 실적이 구매실적에 자동 반영됩니다.  
② 통계목은 e호조시스템 이용 자치단체 전용 항목으로, 그 외 기관은 미가입 가능합니다.

2) 엑셀양식(간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실적 작성

- (유의사항) 모든 엑셀 양식의 데이터 표시형식은 모두 [텍스트]이며, 원본의 표시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변경시 등록오류 발생)

	A	B	C	D	E
1	간접구매				
2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3	2025-07-27	A지부	기념품 구매	476-86-00273	70000000
4	2025-08-28	B지부	기념품 구매	246-86-02554	70000000

### 3) 작성파일(엑셀) 업로드

[사회적협동조합(간접구매)] 품목별 실적 일괄등록

가치장터 거래실적 다운로드

품목별 세부실적

엑셀 업로드

엑셀양식 다운로드

등록일(최근 변경일)

업로드 엑셀파일

### 4) 첨부파일 등록 및 정합성 검사 후 저장

○ 파일 선택 후 등록방식(①초기화 후 등록 ②추가등록) 선택

- \* (초기화 후 등록)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자동 삭제. 등록 데이터로 갱신
- \* (추가등록) 저장된 데이터 유지되고, 데이터 추가 등록
- \* 구매내역은 최대 3,000개까지 가능. 3,000개를 초과하는 내역은 '추가등록'

○ 파일 등록 후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실시. 검사 결과(정상, 비매칭, 공란, 오기재, 중복)에 따라 데이터 확인·수정하여 저장

-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 \* (비매칭) 구매실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와 다른 경우
- \* (공란) 엑셀양식의 입력 항목 입력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경우
- \* (오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등 잘못 입력된 경우
- \* (중복) 동일한 구매실적이 기재된 경우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시작

정상 0 비매칭 0 공란 0 오기재 2 중복 0

구매 실적

정합성 검사 결과 다운

No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품계목
합계금액					4,000,000원	

저장하기

### < (선택)[월별 구매실적] 등록 >

○ 품목별 구매실적 방식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택하고,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시 등록하지 않음

\* 자치단체는 월별 구매실적 등록 불가

1) '월별 구매실적 등록' 선택 후 '엑셀양식 다운로드'하여 저장

2) 엑셀 양식(월별 구매실적(양식).xlsx)에 월별 구매실적 작성 (원 단위)

○ 구매금액이 없을 경우 0원 기입

3) 작성파일(엑셀) 업로드

4) 첨부파일 등록 및 정합성 검사 후 저장

5) 입력 내역 확인 및 구매실적 저장

**[ 2025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단위: 원)

시기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5)				총 구매액(2025)	
		물품		용역		물품	용역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1분기	1월	2,000,000	6,000,000	2,000,000	6,000,000	0	0
	2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3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2분기	4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5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6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3분기	7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8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9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4분기	10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11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12월	400,000	6,000,000	500,000	6,000,000	0	0
합계		6,400,000	72,000,000	7,500,000	72,000,000	0	0
소계		78,400,000		79,500,000		0	
총계				157,900,000		0	

엑셀 다운로드    구매실적 저장

### ③ '2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계획 등록

- 계획 또한 공시되므로 반드시 작성
- 구매실적 저장 후 계획 등록 가능

#### 1) '구매계획관리' 선택 후 '엑셀양식 다운로드'하여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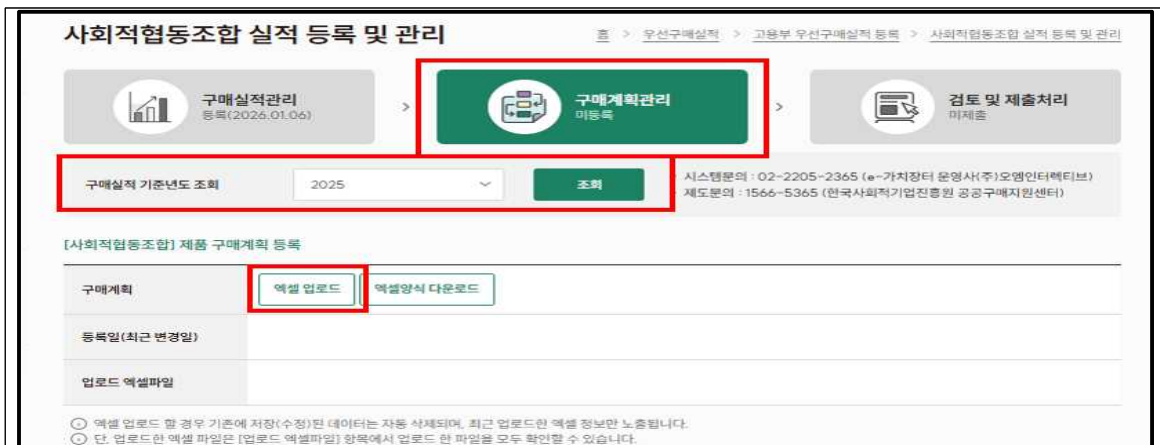
#### 2) 엑셀 양식(월별 구매계획(양식).xlsx)에 월별 구매계획 작성 (원 단위)

구매계획

▪ '공사' 구매계획은 '용역' 구매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구분코드	실적구분	대상구분코드	대상구분	1월	2월
04	사회적협동조합	01	물품		
04	사회적협동조합	02	용역		

#### 3) 작성파일(엑셀) 업로드



#### 4) 첨부파일 등록 및 정합성 검사 후 저장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 최근 업로드 데이터로 갱신

**구매계획( 2025) 엑셀 업로드** ✕

**STEP1. 구매계획 관리에 필요한 엑셀파일 등록합니다.**

첨부파일 파일 선택 진출원.xlsx

※ 엑셀로 업로드 할 경우 기존에 저장(수정)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만 노출됩니다.

**STEP2.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확인 ⇨ 엑셀수정 ⇨ 재검사 ⇨ '저장'**

※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시, 공란 또는 오기재 등 오류부분은 화면 상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오류사유 안내)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시작**

#### 5) 입력 내역 확인 및 구매계획 저장

**[ 2026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단위:원)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계획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시기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6)		총 구매액(2026)	
		물품	용역	물품	용역
1분기	1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2월	3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3월	6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2분기	4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5월	7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6월	8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3분기	7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8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9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4분기	10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11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12월	200,000	200,000	200,000,000	500,000,000
소계		4,000,000	2,400,000	2,400,000,000	6,000,000,000
총계		6,400,000		8,400,000,000	

엑셀 다운로드
구매계획 저장

#### 4) 검토 및 제출

##### 1) 구매실적, 구매계획 입력 결과 확인

- (2025년) 품목실적·구매실적, (2026년) 구매계획 정보 확인

**사회적협동조합 실적 등록 및 관리**

홈 > 우선구매실적 > 고용부 우선구매실적 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실적 등록 및 관리

구매실적관리  
등록(2026.01.09)

구매계획관리  
등록(2026.01.09)

검토 및 제출처리  
미제출

구매실적 기준년도 조회:  조회

\* 시스템문의 : 02-2205-2365 (e-가치창터 운영서주)오염인터랙티브  
 \* 제도문의 : 1566-536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지원센터)

[ 2025년] 품목실적 정보

상세내역 조회 월별현황

구분	물품(원)	용역(원)	소계(원)	총계(원)
등록된 품목실적 정보가 없습니다.				

[ 2025년] 구매실적 정보

월별현황

구분	물품(원)	용역(원)	소계(원)	총계(원)	비율(%)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직접구매	6,400,000	7,500,000	13,900,000	157,900,000	∞
	간접구매	72,000,000	72,000,000	144,000,000		

[ 2026년] 구매계획 정보

구분	물품(원)	용역(원)	합계(원)	비율(%)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48,000,000	60,000,000	108,000,000	∞

##### 2) 담당자 정보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클릭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

- 담당자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담당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의 변경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에서 가능합니다.

부서	<input type="text" value="테스트"/>
연락처(사무실)	<input type="text"/>
연락처(핸드폰)	010- <input type="text"/>
이메일(기관계정)	<input type="text" value="...@..."/>

제출

- '검토 및 제출처리' 하단에 '제출((0000.00.00.))' 표시가 나와야 제출 완료



< 작성시 유의사항 >

- **구매실적 작성대상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일반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총구매액] : 물품과 용역(공사 제외) 구매금액**(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총구매액 기준 참조)  
품의 유형과 무관하며 물품, 용역 구매 관련 예산 비목으로 지출한 총구매액
- **구매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이 없을 경우**  
→ **[총구매액] 반드시 입력,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0" 입력**
  - 국가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 디브레인, e호조, 에듀파인 등 재정시스템 조회
  - 그 외 공공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 집계
- **구매실적 및 계획 집계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
  - '25년도 구매실적 입력 대상 기간: 2025.1.1.~2025.12.31.
  - '26년도 구매계획 입력 대상 기간: 2026.1.1.~2026.12.31.
  - \*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대금 지급일 기준
- [2026년도 구매계획]은 [2025년도 구매실적]을 참고하여 작성
- **[총 구매액]과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모두 제외되는 항목**
  - **재화, 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금액**
    - \* 기관운영을 위한 일상 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사례금, 수당 등
    - \*\*\* 산하기관 출연금, 각종 보조금, 기부금 등
  - **원자재, 재료 구매액**
    - \*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 **[총 구매액]에는 포함되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일반기업(대기업 등 非사회적협동조합)의 완제품 납품 등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질문****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답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지침의 <붙임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단위가 소속 하위 단위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교육청의 경우 광역단위가 소속 기초단위 구매실적 합산

단,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 기관의 실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공공기관이 예산을 통해 재화(물품) 및 서비스(용역)를 직접 구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접구매의 경우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문****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나요? 구매계획 수립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답변**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평가 중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 타 제품의 의무구매비율,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가기관(dBrain), 자치단체(e호조), 교육청(에듀파인), 지방의료원(K-HOPES), 지방공기업(LOBAS)은 각 재정시스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은 가치장터(www.sepp.or.kr) 공지사항에 등록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 다운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개별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단, 기관의 재정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집계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단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은 1인 견적 5천만 원, 2인 견적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관련

질문	구매 당시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었으나, 해당 연도 말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연도말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coop.go.kr">www.coop.go.kr</a> )에 공고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 평가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사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사가 될 수 있으나, 조합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과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점 관련 여부를 확인·증빙하여야 합니다.